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재단은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결산) 재단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기본재산 및 운영수입의 수입·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해산) ①재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단이 해산할 경우 재단의 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 변제후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14조(경영평가) ①시장은 출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단의 경영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의 확인) 시장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민법 제32조 및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재단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그 인계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은 해산되며, 이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에 납부된 각 출연금 등은 재단에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7(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서울신용보증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는 "재단"이라 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중소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창업보육, 시제품·기술·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1. "유통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2. "건설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3. "관광호텔사업자"라 함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동조동항제6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

항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3.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제12조제1항제9호중 "서울창업보육센터 입주자"를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를 동조동항제16호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13호 내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를 "제1항제1호·제2호·제8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로 한다.

13. 유통사업자

14. 건설사업자

15. 관광호텔사업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517호 서울특별시실업대책위원회조례 부칙 제2항중 "2000년 6월 30일"을 "2001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산업경제국(소비자보호과)란 중 사무명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수임기관
산업경제국 (소비자 보호과)	7. 제조담배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다. 휴업 및 폐업 신고의 수리 라.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 및 관계장부·서류의 확인·열람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담배사업법 제13조 ㅇ동법 제15조 ㅇ동법 제22조의2제1항 ㅇ동법 제24조제1항, 제2항 ㅇ동법 제29조	구청장

별표의 환경관리실(폐기물시설과)란 중 사무명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 국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수임기관
환경관리실 (폐기물 시설과)	2.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재활용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휴업·폐업 및 재개업신고의 수리 다.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명령, 관계서류·시설·장비 등의 검사 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 ㅇ동법 제42조 ㅇ동법 제43조제1항, 제2항 ㅇ동법 제45조 ㅇ동법 제63조	구청장